

제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글로벌 공기업

치명적인 대신*
다양한 JTO

제주관광공사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023. 1.



제주관광공사
JEJU TOURISM ORGANIZATION

목 차

I. 일반사항

- 목적
- 적용범위
- 관련법령
- 용어의 정의
- 중대재해 대응 조직 책임 및 권한

II. 중대재해 발생 전

- 예방활동
- 비상조치계획 수립
-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III. 중대재해 발생 시

- 대응원칙
- 작업중지 및 상황전파
- 신고 및 응급조치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흐름도
- 사고 원인조사
-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별 주요항목
- 중대재해 대응 활동

IV. 안전사고 상황별 대응 역할 및 절차

- 추락, 끼임, 절단, 넘어짐, 협착 등 발생 시
- 감전사고 발생 시
- 밀폐공간 질식 사고 발생 시
- 화학물질 누출·접촉 사고 발생 시
- 전기화재 사고 발생 시
- 기타 사고 발생 시(상처, 출혈, 화상 등)
- 기타 사고 발생 시(열화상, 화학물질 화상)

V. 상황별 응급조치

-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 상처·출혈 발생 시
- 폭염 시 고온 손상 환자 발생 시
- 추락 낙하에 의한 골절 발생 시
-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 발생 시(심폐소생술)

VI 위험별 시나리오(위기관리매뉴얼)

- 사옥 등 건물관리 위험
- 폭염/한파 발생
- 태풍/폭우 발생
- 화재발생
- 지진발생
- 업무상 재해발생

VII 각종서식

- 작업중지 표지
- 사고발생 보고서
- 사고조사 보고서
- 산업재해 조사표

I. 일반사항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중대재해 대응 조직 책임 및 권한

1 목 적

본 매뉴얼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 현장 응급처치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주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공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이용자의 중대 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작업 중지 대피 및 대응 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1. 제주관광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2. 제주관광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3. 제주관광공사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 및 위탁 등의 사업

3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가.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 원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나.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이상 발생
2. 관리책임자란 제주관광공사 소속 직원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자로 각 부서장을 말한다.
 3. 관리감독자란 현업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적 지휘(부서장 및 팀장)에 있는 자(도급 및 용역 시행 부서 포함)를 말한다.
 4. 안전관리담당자란 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주관광공사 소속 직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4 중대재해 대응 조직 책임 및 권한

대 상	책임 · 권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비상사태 대비 조직 관리 책임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부서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 업보건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처리에 대한 총괄 지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 재해방지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 유지 관리
관리책임자(각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 (팀장 및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 작업중지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 확인 및 보건에 관한 조치 후 작업 개시 ♣ 비상사태 발생 시 시속한 조치 및 현황파악, 본사 안전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에 보고(사고발생보고서 및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할수 있도록 독려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작업중지권 행사 ♣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법률과 규칙 준수

II. 중대재해 발생 전

1 예방 활동

2 비상 조치 계획 수립

3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II > 중대재해 발생 전

1 예방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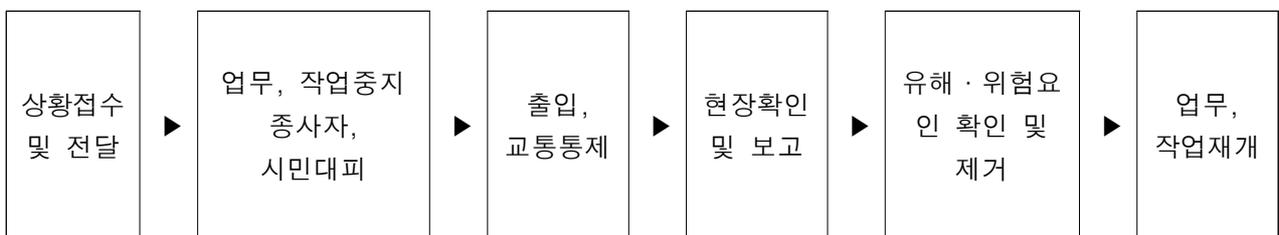
1. 지속적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2.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작업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3.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4.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5. 개인 안전장구 지급,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6.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유소견자 관리

2 비상 조치 계획 수립

1. 유해·위험 특성을 반영한 비상 조치계획 마련
 - 가.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 나. 화재 및 비상 시 훈련에 관한 사항
 - 다. 비상조치 절차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라.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 마. 외부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바.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2. 비상조치 훈련 및 매뉴얼 교육 실시
 - 가.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교육 및 훈련 등
 - 나. 근로자 교육
 - ①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반적인 교육 등
 - ② 교육방법 : 전 지원 및 신입 직원, 도급, 용역 계약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3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1. 근로자(종사자), 부서 감독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을 발견할 경우 중대재해 주관부서(경영전략실)에 즉시 보고
2. 작업 중지
 - 가. 업무 작업 중지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 피조치 및 현장 출입, 교통통제(필요시 경찰에 협조 요청)
 - 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즉시 작업 중지 가능
 - 다.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3. 현장 확인 및 상황 보고
 - 가.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서장 등에게 즉시 보고
 - 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② 위험도가 높은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후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 및 작업 재개(필요 시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대책 마련)
 - ③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 절차



III. 중대재해 대응절차

1 대응 원칙

2 작업중지 및 상황 전파

3 신고 및 응급처치

4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체계 및 흐름도

5 사고 원인 조사

6 재해 배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7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별 주요항목

8 중대재해 대응 활동

9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Ⅲ > 중대재해 발생 시

1 대응 원칙

1.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 ‘피해자 구호 우선’, ‘내부 보고’ 보다 ‘응급신고’ 를 먼저하여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작업중지 ② 상황전파 ③ 초기대응 ④ 긴급대피 ⑤ 내부보고 및 대응
⑥ 현장보존 ⑦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2 작업중지 및 상황전파

1.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 발생 및 위험요인을 전파한 후 근로자를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 가. 관리감독자 등은 근로자가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근로자는 사업장 내 작업장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라.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감독자 근로자는 비상벨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 소리로 주변 근로자에게 비상상황을 신속히 전파 하여야 한다
2. 급박한 위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높이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

락 위험이 높은 경우

-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다.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라.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마.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사.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아. 그 밖의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이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

3 신고 및 응급조치

사업장 및 공중 이용시설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거나 이를 목격한 자는 재해자 구출, 응급처치, 병원후소 등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초기 대응

- 가.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2차 재해예방을 위해 사고 상황별 초기대응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나.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 ① 감전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부도체 나무 플라스틱 등으로 사고자를 떼어냄
- ② 질식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③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하며 진압이 힘든 경우 신속히 대피
- ④ 무너짐 해당 공정의 기계·장비를 정지하여 차 피해 발생 방지
- ⑤ 기계 재해 발생 시 기계를 정지하여 2차 피해 발생 방지
- ⑥ 유해 물질 누출, 노출 원인 차단 후 신속히 대피하고 호흡기 및 피부를 보호
- ⑦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점화원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한 후 접촉을 금지함

다. 응급처치

- ① 사고 최초목격자는 재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경우 응급처치 실시
- ② 추락 등으로 척추 등 골절환자는 구조·구급대가 올 때까지 이동 금지
- ③ 협착 감전 등 기계 기구에 의한 재해는 신속히 기계를 정지한 후 재해자 구조
- ④ 재해자의 의식 여부를 판단하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지원

2. 사고 신고 및 보고

가. 재해발견자는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관련 기관 경찰,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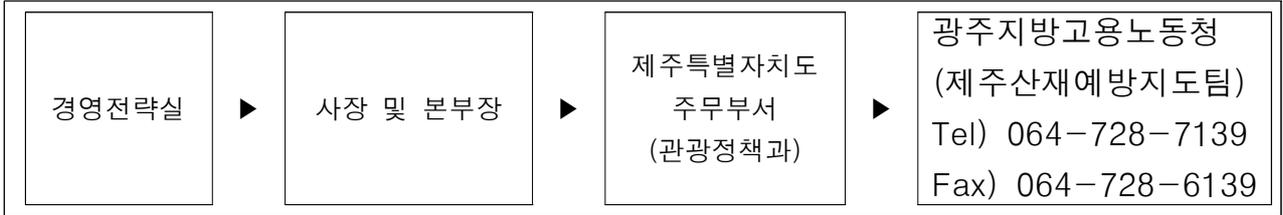
나. 관리감독자 등은 사고 발생 시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제주산재예방지도팀)에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 보고 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안전보건책임자 및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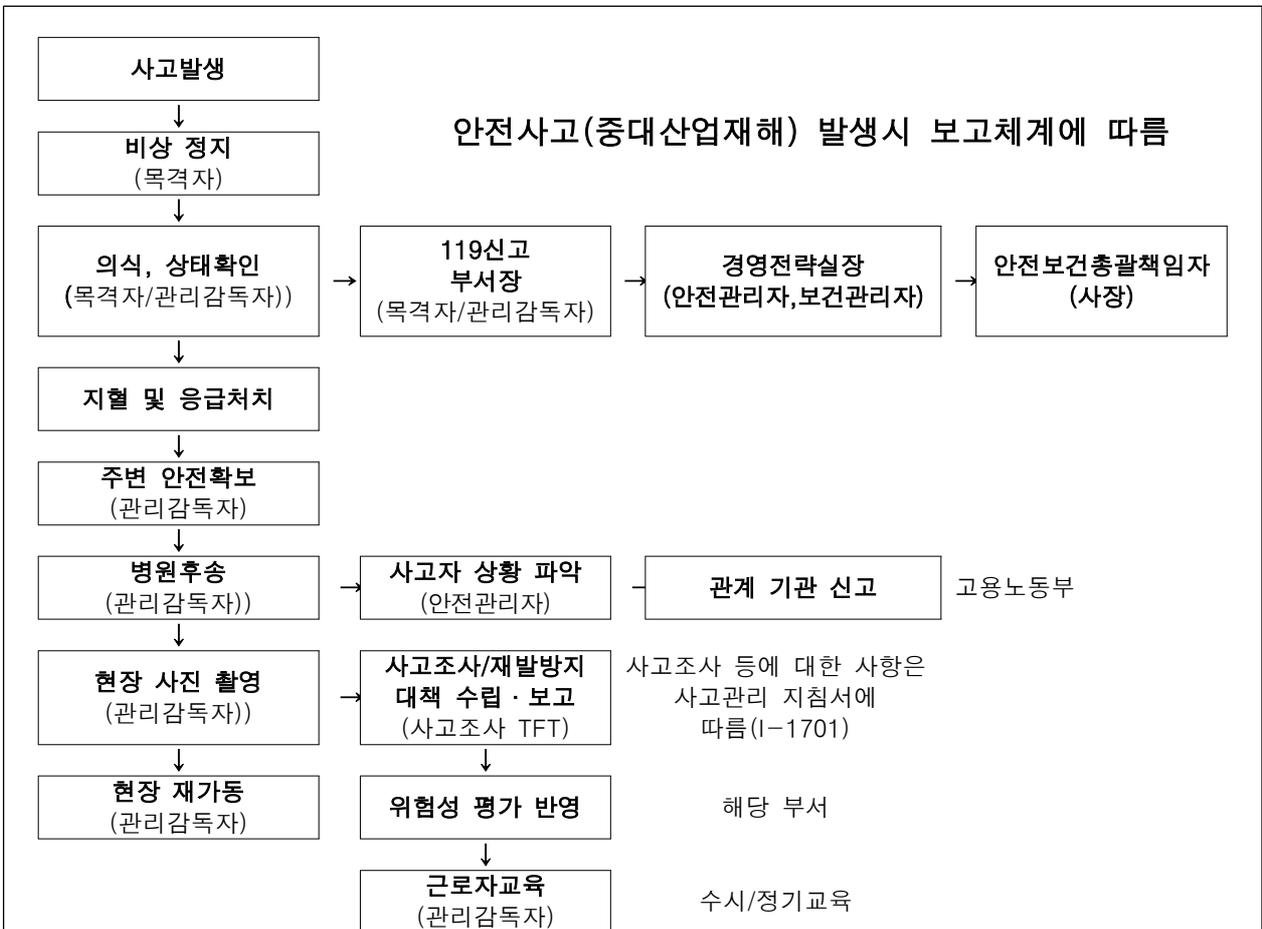
1.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절차(보고체계 흐름도)

가. 보고체계 흐름



※ 관리책임자(감독자) 구분에 따라 사고 발생 관서에서 사고 조사 및 보고, 재발 방지대책 등 직접 대응

나. 대응 및 상세 보고체계 흐름도



1. 안전사고별 긴급 대응요령

- (1) 협착 : 기계/장비 정지 및 응급처치
- (2) 추락 : 응급처치 및 119신고(인명구조 우선)
- (3) 전도 : 기계/장비 정지 및 응급처치
- (4) 낙하물 사고 : 인명안전 우선조치 및 2차 피해방지
- (5) 화재 : 인명안전 우선조치 및 2차 피해방지, 119신고
- (6) 밀폐 : 작업 중지 후 신선한 공기 있는 곳으로 대피

2. 제주관광공사 비상연락 흐름도

제주관광공사 비상연락 흐름도

사장님
740-6012

본부장님
470-6012

제주웰컴센터

- 경영전략실장
- 글로벌마케팅그룹
- 지역관광그룹
- 문화관광그룹
- 관광산업혁신그룹
- 통합디지털플랫폼
그룹
- 데이터 R&D그룹



수익사업실

- 수익사업실장
- 면세기획팀장
- 면세영업팀장
- 면세지원팀장

관련 연락처

<p>제주웰컴센터 보안(시설) 740-6005 [24시간 상시근무]</p>	<p>T I C 740-6911 [무휴 근무]</p> <p>관광정보센터 740-6000 [무휴 근무]</p>	<p>지정면세점 780-7700</p> <p>물류센터 742-8748</p>
---	--	--

5 사고 원인 조사

1. 안전관리부서는 재해가 발생한 당해 부서장 또는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와 공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한다.
 - 가. 사고 원인 조사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고 관련작업자, 근로자 또는 필요 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나. 발생한 사고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작업일 경우에는 해당업체 담당자를 조사에 참여 시킨다.
 - 다. 안전관리부서는 조사한 결과를 사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6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1. 당해 부서는 안전관리부서와 재해 조사 후 파악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사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 가. 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는 아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①단계	▶ 사실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②단계	▶ 재해요인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③단계	▶ 재해요인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원인 및 간접 원인 결정
④단계	▶ 계획(대책)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 수립

- 나. 해당 작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여 인적·물적·관리적 측면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재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 다.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공유한다.
2. 해당 부서장은 보고한 재발방지대책을 지체없이 시행하고 그결과를 사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3.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부서장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 재해 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한다.

7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별 주요 항목

단 계	단계별 수행 내용
(1단계) 발생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인지 시 주변사람들에게 사고 발생 전파 ○ 관리감독자(부서장, 해당팀장 등)에게 사고발생 보고
(2단계) 작업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중지 실시 :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실시 ○ 작업중지권자 : 사업주, 근로자(협력업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근로자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재해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함
(3단계) 근로자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비상 대피장소로 대피 시행 ○ (대피 장소 지정)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대피 장소를 적절한 장소 에 지정 운영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 ○ 비상 대피 훈련을 통한 대응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대피 안내장소 지정 및 교육 - 모든 근로자가 걱정안 시간 내 대피할 수 있는 경로 확보 - 응급 차량 및 재해복구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확보
(4단계) 재해자 구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발생 기계·전기 등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와 동시에 119 구급대, 소방서,

단 계	단계별 수행 내용																
	<p>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p> <p>* 재해자 응급조치 특정사고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방법은 [붙임5] 참고</p> <p>※ 2차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 구호조치 이행 예외</p>																
<p>(5단계) 현장 초동대응</p>	<p>○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사고 확대 방지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을 중지하고 추가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 유지 <table border="1" data-bbox="419 752 1425 1111"> <thead> <tr> <th>사고상황</th> <th>사고확대 방지조치</th> </tr> </thead> <tbody> <tr> <td>감전</td> <td>· 즉시 전원 차단, 부도체(나무 등)를 사용하여 사고자를 떼어냄</td> </tr> <tr> <td>질식</td> <td>·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td> </tr> <tr> <td>화재</td> <td>·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 소화 수행. 생명위험 시 대피우선</td> </tr> <tr> <td>기계 재해</td> <td>· 기계 중지 후 사고자 조치</td> </tr> <tr> <td>유해물질 누출</td> <td>· 접촉 -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td> </tr> <tr> <td>인화성, 산화성 물질누출</td> <td>· 점화 발생원인 제거 및 접촉금지</td> </tr> </tbody> </table> <p>○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p> <table border="1" data-bbox="419 1182 1425 1417"> <thead> <tr> <th>사고현장 보존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절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td> </tr> </tbody> </table>	사고상황	사고확대 방지조치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부도체(나무 등)를 사용하여 사고자를 떼어냄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 소화 수행. 생명위험 시 대피우선	기계 재해	· 기계 중지 후 사고자 조치	유해물질 누출	· 접촉 -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	인화성, 산화성 물질누출	· 점화 발생원인 제거 및 접촉금지	사고현장 보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절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사고상황	사고확대 방지조치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부도체(나무 등)를 사용하여 사고자를 떼어냄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 소화 수행. 생명위험 시 대피우선																
기계 재해	· 기계 중지 후 사고자 조치																
유해물질 누출	· 접촉 -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																
인화성, 산화성 물질누출	· 점화 발생원인 제거 및 접촉금지																
사고현장 보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절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p>(6단계) 사고발생 보고</p>	<p>○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관련 계통에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부서 : 안전품질처 보고(사고관리 지침서에 따름) - 보고내용 : 사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보고방법 : 사고 발생 후 즉시 사고속보(I-1701-01)을 																
<p>(7단계) 위험요인 제거</p>	<p>○ 위험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해당 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보건 조치를 한 후 작업을 개시해야 함</p>																

단 계	단계별 수행 내용
	<p>○ 위험성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기계적 요인, 전기적요인,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표를 작성하여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이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사고조사 보고서 ■ 기계, 장비 등 보유현황 및 설명서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현황 및 근로자 교육 자료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다음 순서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질적(근원적)대책 : 위험한 작업(공정)폐지·변경 등 · 공학적 대책 :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 배기장치 등 · 관리적 대책 : 매뉴얼 정비, 출입 금지, 노출 관리, 교육 훈련 등 · 개인보호구 사용 <p>※ 세부 사항은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름(P-0203)</p>
<p>(8단계)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이행</p>	<p>○ 사고 원인의 종합적 파악 (필요 시 전문기관 의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공휴일 제외)이내에 착수하며 사고조사 보고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고 구분에 따라 보고 한다.(사고관리 지침서에 따름) <p>○ 작업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위험성 평가, 수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 위험 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 <p>○ 전 직원 사고 사례 안내</p> <p>○ 사고 대응 훈련 실시</p>
<p>(9단계) 점검 및 개선</p>	<p>○ 자체 점검 및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장별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상기 매뉴얼에 따라 조치 또는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연2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 상기 매뉴얼 교육 및 공유 - 자체 점검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

1. 초기대응

가. 전부서 임직원에 의한 정보수집 및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보고,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보건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징후 포착

- ① 안전 점검 시 위기 징후가 주의 수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즉시 작업 중지 후 안전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위기 징후 내용 보고

※ 안전관리 주관부서의 장 : 경영전략실장

안전관리 주관부서 관리감독자 : 경영지원팀장

- ② 임직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임직원은 즉시 작업 중지 후 안전관리 주관부서에 내용 통보

나.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통보받거나 확인한 위기징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 위험요인 제거 또는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감축 후 업무재개

- ①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확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위험성까지 감축
- ② 주관부서는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관련 부서에 교육 후 업무재개

2. 사고 대응

가. 사고를 발견한 임직원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 후 재해자 구출 및 필요 시 응급 조치 실시, 사고 발생 전파 및 119·소속부장에게 내용 신고

나. 신고를 받은 사고 발생부서의 소속부장은 근로자들을 대피시키고 필요 시 초기 대응 조치실시 및 안전관리 주관부서(안전관리부)에 사고 내용 신고

다. 안전관리 주관부서(안전관리부)는 적절한 사고 확대 방지 조치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연락·유선 보고·신고서 제출, 현장보존 등 사고 대응실시

3. 사후관리

- 가. 안전관리 주관부서(안전관리부)는 사고내용(장소, 시간, 유형, 피해 등)을 파악하여 사고원인조사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나. 주관부서는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다. 주관부서는 사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대응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아래 사항 사후 검토·평가 수행
 - ① 사건·사고 발생 원인 분석 결과 검토
 - ② 재해대응 개선계획 및 개선 결과의 적절성 평가
 - ③ 사건·사고 재발 방지대책 및 실행 결과 적정성 평가
- 라. 진단·평가 기구(외부전문기관)는 ③역할을 대신 수행하거나 실행 결과를 진단·평가하여 보완·개선 대책을 제시
- 마. 주관부서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 및 대책 실행 결과를 검토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전 부서 임직원에게 전파 후 업무재개

9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기관명	관련부서	연락처	
		전화	비고(팩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064) 710-3800	064) 710-3809
	안전정책과	064) 710-3850	064) 710-3949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	064) 710-2561	064) 710-3949
	재난대응과(상황실)	064) 710-3671	064) 710-3659
제주시	안전총괄과	064) 728-3750	064) 728-3759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	064) 728-3031	064) 728-375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64) 760-3140	064) 760-3149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	064) 760-3161	064) 760-3149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064) 728-7139	064) 728-613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064) 797-7531	064) 797-7518
제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064) 717-1903	-
한라병원	응급실	064) 740-515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064) 710-0711	064) 710-0719
제주지방경찰청	112치안 종합상황실	064) 798-3349	064) 744-430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064) 801-2446	064) 801-2961
해병대 제9여단	군수계획과	064) 908-3400	064) 905-3008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예보과	064) 755-0638	064) 721-0368
		064) 727-0367	064) 753-1401
KT 제주본부	네트워크운용센터	064) 751-7420	064) 751-1300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64) 740-3212	064) 740-3314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기술진단부	064) 740-3830	064) 740-3718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검사부	064) 748-0019	064) 748-0021

IV. 안전사고 상황별 대응 역할 및 절차

- 1 추락, 끼임, 절단, 넘어짐, 협착 등 발생 시
- 2 감전사고 발생 시
- 3 밀폐공간 질식 사고 발생 시
- 4 화학물질 누출·접촉사고
- 5 전기화재 사고 발생 시
- 6 기타 사고 발생 시(상처·출혈, 화상 등)
- 7 기타 사고 발생 시(열화상, 화학물질 화상)

IV ▶ 안전사고 상황별 대응 역할 및 절차

1 추락, 끼임, 절단, 넘어짐, 협착 등 발생 시

■ 비상대응 단계별 역할

구분	관리감독자, 근로자	관리 부서
사고 예방 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 안전장치 설치(방호덮개, 비상정지 장치 등)확인 취급 기계별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요인 사전숙지 기계사용 시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기계정비·보수·청소 작업 중 전원차단(동력차단) 기계작동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시 부착/장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위험 기계 목록 작성 유지 및 점검 방호장치 작동 여부 확인 취급 기계별 안전인증, 안전 검사 실시 기계별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 배포, 관련 안전교육 실시 절단사고 등 관련 접합전문병원 비상연락 체계 구축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중지]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고 발견 즉시 사고기계의 작동 중지(전원 차단) [응급조치]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119신고 및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잘렸을 때 출혈이 심하므로 상처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두툼하게 댄 후 단단히 매어서 지혈 조치 절단된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깨끗이 씻은 후 비닐에 싼 채로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에 젖지 않도록 밀봉 얼음과 물 1:1의 비율로 섞은 봉지에 담아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빨리 접합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 혹은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실시 및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 상세 응급처치 방법은 첨부 ‘상황별 응급처치’ 참조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조사 완료 전까지 해당 작업장 통제 사고 발생경위 파악 및 조사 사고기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실시 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내용 본사 000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복구재발방지 대책마련, 기관내 사고사례 전파시행

■ 추락, 끼임, 절단, 넘어짐, 협착 비상대응시나리오

순서	시간	대응체계도	대응 시나리오
사고발생	h:00	작업 중	· 작업 중지 및 재해사실 알림
사고전파	h:00 +05	↓ 추락, 협착, 넘어짐, 끼임 발생사고	· 사고발생 외침, 즉시 작업중단 (재해자, 목격자) ·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이송(사고 현장 목격자/관리감독자) · 사무실 신고 : 최초 발견자 · 소방서 신고 : 119 구급차 요청
사태 파악 및 비상조치	h:00 +08	↓ 환자 상태 파악 및 응급조치	· 환자의 상태를 파악 필요시 심폐소생술 실시 (목격자- 119구급차 도착시까지)
사전조치	h:00 +10	↓ 환자 장애요인 제거	· 기도확보 유지 · 응급조치 후 후송준비 · 현장 주위에 접근 통제 (사고발생시 현장 관리감독자)
응급환자 이송	h:00 +15	↓ 상황판단지시	· 신속히 응급조치 및 신속한 상황 판단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 (119 구급차 이용)
사고 처리	h:00 +20	↓ 사고수습 · 복구	· 사고지점 통제 · 2차 피해 위험성 파악(관리감독자) · 사고지점 경고테이프(관리감독자)
재발 방지		↓ 원인파악/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2 감전사고 발생 시 (수배전반 전기작업)

■ 비상대응 단계별 역할

구분	관리감독자,근로자	관리 부서
사고 예방 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통제 및 구획표지판을 설치 • 작업 전 안전회의(TBM)실시하며 위험요소에 대해 조치한다. • 작업공구확인 및 안전보호구 착용 • 차단기 조작금지를 위한 Red-Tag 부착 및 전원 차단 • 절연장갑 착용 후 검전기를 이용하여 잔류 전압 측정 • 활선부분은 절연 방호 조치 • 작업 전 물기제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압/전류계 등 전기 측정기기는 정기적으로 검교정 유무 확인 • 위험성평가 작성 여부 및 개선조치 사항 확인 • 전기작업 안전수칙 교육 실시 •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위치 파악 • 절연용 보호용구 착용 확인 • 수·배전 부스 명판 등 부착 확인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중지] 절연장갑 착용 후 해당 전기기기 전원 신속히 차단 • [응급조치] 구호자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봉(마른 나무막대, 플라스틱 막대 등)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부상자와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 • 부상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유무)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필요 시 병원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 혹은 자동체외제세동기(AED) 실시 • 부상자 병원으로 이송 조치 •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원인 제거 재차 확인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내용에 대한 사고조사 실시 • 사고조사 후 보고 및 대책마련

※ 상세 응급처치 방법은 첨부 '상황별 응급처치' 참조

■ 감전사고 비상 대응 시나리오

순서	시간	대응체계도	대응 시나리오
사고 발생	h:00	감전 사고 발생 ⇒ 수배 전반 점검시 감전재해 발생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내에서 작업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환자 발생(작업자가 갑자기 쓰러짐)
상황 전파	h:00 +01	감전 사고 ⇒ 상황전파 ⇒ 관리소 근무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외침 · 119소방대에 응급신고
피해 확산 차단 및 인공호흡	h:00 +05	환자상태 파악 및 119 신고 후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주변 전원 차단 · 환자의 상태 확인(호흡, 맥박) · 호흡이 없을 시 심폐소생술과 AED 실시 · 소방대가 도착하면 현장을 인계한다.
환자이송 (119소방대)	h:00 +07	상황판단 지시	<p>[119소방대 및 사업장 현업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병원으로 후송
사고 처리	h:00 +10	사고수습,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현장 통제 · 2차 재해 위험성 파악 · 사고지점 경고테이프 설치 ·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문가 현장 확인
재발 방지		원인파악/재발 방지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와 관련된 법 유권해석 및 대책수립

3 밀폐공간 질식 사고 발생 시

■ 비상대응 단계별 역할

구분	관리감독자,근로자	관리 부서
사고 예방 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밀폐공간 장소 사전 확인 •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위험요소) •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작업전 , 작업중, 작업 다시 시작하기전 산소·유해가스농도(산소:18%~23.5%, CO2:1.5%미만, CO:30PPM) 체크 할것 • 작업전.중 반드시 환기 실시 • 밀폐공간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설치 • 작업 시 관리감독자 입회 • 측정장비 작동상태 점검 • 개인보호구 보유 및 반드시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및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교육 실시 •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위치 파악 • 측정기기에 검교정 확인 • 작업 전 개인보호구 적정상태 점검 • 보호장구 정기적 점검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구명줄 등) • 밀폐공간 작업 정기적 훈련 실시
대응 단계	<p>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중지] 먼저 119 신고, 주변 사고상황 전파(안전담당 부서 보고) • [응급조치]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착용후 재해자를 구조(구명로프 활용) <p>*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 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유무)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 혹은 자동체외제세동기(AED) 실시 • 부상자 병원으로 이송 조치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 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내용에 대한 사고조사 실시 • 사고조사 후 보고 및 대책마련

※ 상세 응급처치 방법은 첨부 '상황별 응급처치' 참조

■ 질식사고 비상대응시나리오

순서	시간	대응체계도	대응 시나리오
사고 발생	h:00	질식 사고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 부족으로 추정되는 환자 발생 (작업자 쓰러짐)
상황 전파	h:00 +01	질식사고 ⇒ 상황전파 ⇒ 근무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외침 · 119 소방대에 응급신고 · 응급구조위해 근무자에게 사고 발생 통보
피해 확산 차단 및 인공호흡	h:00 +05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후 재해자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후 쓰러진 재해자를 구조 · 환자의 상태확인(호흡, 맥박) · 호흡이 없을 시 심폐소생술과 AED 실시 · 소방대가 도착하면 현장을 인계한다.
환자이송 (119소방대)	h:00 +07	상황판단 지시	<p>[119소방대 및 사업장 현업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병원으로 후송
사고 처리	h:00 +10	사고수습,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현장 통제 · 2차 재해 위험성 파악 · 사고지점 경시 테이프 설치
재발 방지		원인파악/재발 방지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사고와 관련된 법 유권해석 및 대책 수립

4

화학물질 누출 · 접촉사고

■ 비상대응 단계별 역할

구분	관리감독자,근로자	관리 부서
사고 예방 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MSDS/GHS 비치 및 교육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량의 인화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보관 장소 마련
전파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근로자들에게 사고 전파 관리감독자(필요 시 소방서, 병원)에 약품 누출 발생사고 상황 신고(위치, 약품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의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금수성 물질이나 인등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 묻었을 경우 물로 세척 금지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담당 부서와 함께 정화 및 폐기작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출물질에 대한 MSDS/GHS 및 대응 장비 확보 사고 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흡착제, 흡착포, 흡착 헨스, 중화제 등 사용)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원인 조사 사고내용 0000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 응급처치 방법은 첨부 '상황별 응급처치' 참조

■ 비상대응시나리오 - 화학물질 누출

순서	시간	대응체계도	대응 시나리오
위험물 취급		위험, 유해물 취급 시	· 사업장내에 위험물질, 유해물질이 누출된 경우
사고발생	h:00	위험, 유해물질 유출 ⇒ 상황전파 ⇒ 주변근무자 상황전파	· 유해물질 취급 시 취급부주의, 배관 등 부식으로 인한 파손 등으로 위험물질,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초기대응	h:00 +01	배수구로 배출 ⇒ 확산방지	· 유출된 위험물, 유해화학 물질이 유출 시 배수구로 신속한 배출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는 초기대응 실시
응급신고 (관리감독자)	h:00 +02	응급신고 : 사업장 관리감독자 ⇒ 주변통제 및 응급조치	·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응급 신고를 하고 관리감독자와 같이 주위에 인원 접근을 통제, 설비 및 주변 오염을 방지 - 안전보건담당자가 도착하면 현장 인계
상황보고 및 상황인계 (관리감독자)	h:00 +05	안전보건부서에 상황보고 ⇒ 안전관리자에게 상황보고 ⇒ 관리감독자 지시 이행	· 환자발생시 응급조치 후 상황 판단하여 병원에 후송 => 해당부서에서 조치 · 안전보건안전관리자에 경위보고를 하고 상황 인계 및 협조 · 안전보건부서에 보고하고 사업장 관리감독자의 지시사항 이행
사고 처리	h:00 +07	사고수습, 복구 : 안전보건팀, 사업장 현업담당자	[안전보건부서 및 사업장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의 중화 처리 및 사고 수습 · 유출 물질의 제거 및 회수 처리 · 발생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위탁처리
재발 방지		원인파악/재발 방지대책 수립	[관계자 소집대응] ·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와 관련된 법 유권해석 및 대책수립

5 전기화재 사고 발생 시

■ 비상대응 단계별 역할

구분	관리감독자,근로자	관리 부서
사고 예방 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 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 금지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제 외함 전기기기 접지실시 결함이 있는 전기설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작업장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보호 장치 등 안전설비에 대한 작동 상태 주기적 점검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발생 전기기기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 연기에 의한 피해자나 화재에 의한 화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화재 발생 시 해당 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 있으므로 물 분사 금지 소화기는 가능하면 C급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 진화 필요 시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사고 발생 지점 전기 배선 상위단의 분전반 전원 차단 연기 질식 환자에 대비한 신선한 공기 확보 및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안정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 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화상 및 질식 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 조치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사고내용 00000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시행 	

※ 상세 응급처치 방법은 첨부 ‘상황별 응급처치 ’ 참조

■ 비상대응시나리오 - 화재폭발사고

순서	시간	대응체계도	대응 시나리오
최초 발견자	h:00	화재발견 ⇒ 상황전파 ⇒주변근무자 상황전파	“불이야, 불이야” 를 큰소리로 외쳐 주변 작업자 및 동료에게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림
상황신고 (119구조대)	h:00 +01	응급신고 : 인근 소방대 ⇒ 주변통제 및 대피	“00부서 홍길동입니다. 현재 00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침착하게 정확한 위치 및 상황을 알려준다.
초기대응	h:00 +03	초기소화 ⇒ 119소방대 인계	·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소화기 및 소방 장비 동원 초기 진압 실시 - 주변 근무자 및 인근 사무실 근무자 - 소방대가 도착하면 현장을 인계한다.
환자발생	h:00 +05	응급조치 ⇒ 119소방대 인계	· 환자 발생 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 주변 근무자 및 인근 사무실 근무자 - 소방대가 도착하면 현장을 인계한다.
상황보고 및 상황인계 (119담당자)	h:00 +07	119 담당자에게 상황보고 및 인계 ⇒ 관리감독자에게 상황보고 ⇒소방대 지시이행	· 환자발생 시 응급조치 후 상황 판단하여 병원에 후송 - 출동소방대에서 조치 · 소방대에게 경위보고를 하고 상황인계 및 협조 · 출동소방대원 지시 사항 이해
사고처리	h:00 +10	사고수습, 복구 : 119소방대, 안전관리자	[출동소방대 및 안전관리자] · 소화기, 소화전 관리, 소방장비 정리 및 사고 수습 · 소손, 파손, 소각 잔재물의 제거 및 회수 처리 · 발생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위탁처리
재발방지		원인파악/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협의체 소집대응] ·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와 관련된 법 유권해석 및 대책 수립

6 기타 사고 발생 시 (상처 및 출혈)

■ 비상대응 단계별 역할

구분	관리감독자,근로자	안전담당 부서
사고 예방 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부착 및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병원 정보 확보 안전보건 교육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중지] 사고 상황 파악 [응급조치]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베인 경우 상처 소독 보다 지혈 처치를 우선으로 하며 , 작은 상처는 소독 후 밴드 사용, 큰 상처인 경우 붕대를 감은 후 심장보다 높이 올려 위치 찰과상인 경우 소독하기 전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소독액을 사용 후 처치 멍이 든 부위는 얼음주머니나 찬물로 찜질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친부위가 움직이지 못하면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되므로 병원진료 실시 지혈 등 응급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 하되 2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원인 조사 사고 내용 0000보고

※ 상세 응급처치 방법은 첨부 ‘상황별 응급처치 ’ 참조

7

기타 사고 발생 시 (열화상 , 화학물질 화상)

■ 비상대응 단계별 역할

구분	관리감독자,근로자	관리 부서
사고 예방 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부착 및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화상병원 정보 확보 안전보건 교육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중지] 사고 상황 파악 [응급조치]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가벼운 화상인 경우 화상부위를 찬 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수건을 대어 열기를 식힌다. 심한 화상인 경우 깨끗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상처부위를 덮어 냉각하고 감염 방지 등 응급조치를 수행 후 119 인계 또는 병원 이송 화상부위나 물집은 건드리지 말고 2차 감염을 막기위해 상처부위를 거즈로 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원인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원인 조사 사고 내용 0000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 및 시행 	

※ 상세 응급처치 방법은 첨부 ‘상황별 응급처치 ’ 참조

V. 상황별 응급처치

1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2 상처·출혈 발생 시

3 폭염 시 고온손상 환자 발생 시

4 화학물질 노출 및 화상 발생 시

5 추락 낙하에 의한 골절 발생 시

6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 발생 시

1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 화상을 입었을 경우(화재, 폭발 등)

1. 즉시 수 분 내지 심하면 30분 이상 찬물로 식힌다.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소독약을 먼저 바르는 것보다는 냉각이 우선이다.
2. 옷이나 양말은 그 위로 물을 끼얹어 냉각시킨 후 벗긴다. (벗기기 힘들면 가위 이용)
3. 부어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등을 빼어 준다. 1도 화상은 냉각 후 바셀린 거즈나 윤활유를 바른다. 단, 된장이나 소주 등은 바르지 않는다.
4. 물집은 가급적 터뜨리지 않는다. 너무 많이 부풀어 통증을 호소하면 소독된 바늘로 물집의 아래 부위를 찔러 삼출물을 제거하고 소독한다.
5. 물집이 생긴 범위가 넓으면 약을 바르지 말고 냉각만 하면서 병원에 간다.
6. 체온소실로 인한 저체온증에 빠지기 쉬우므로 화상 부위를 10분 이상 물에 담그지 않는다. 병원으로 이송하며 계속 냉찜질을 할 때도, 해당 부위를 제외하고는 보온한다.(어린이, 노인, 겨울의 경우)
7. 광범위한 화상에서 통증과 체액 손실로 쇼크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의식이 있으면 찬 소금물을 준다.
8. 이송 도중 호흡을 유지하고 쇼크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 차량을 이용하여 화상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으로 후송한다.

1도화상	 <p>1도 화상(표재성 화상) 표피층만 손상</p>	
2도화상	 <p>2도 화상(부분층 화상)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부분이 손상</p>	
3도화상	 <p>3도 화상(전층 화상) 진피 전층과 피하조직까지 손상</p>	

2 상처 · 출혈 발생 시

■ 지혈법

가. 직접 압박

출혈 부위에 멸균거즈나 깨끗한 천을 대고 직접 압박하고 심장보다 높이 들어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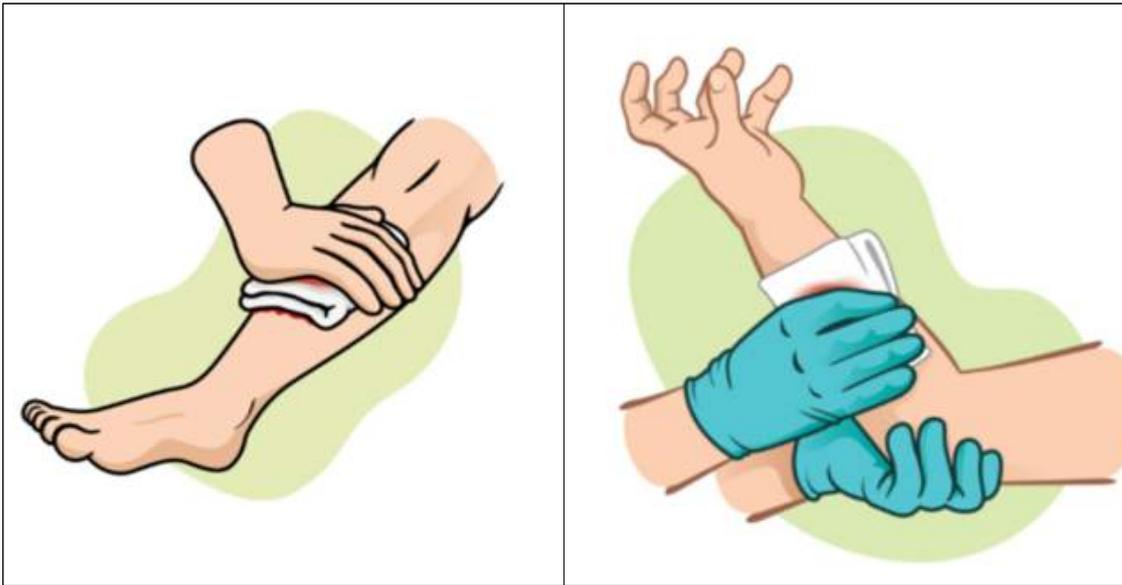
나. 간접 압박(선택적 동맥 압박)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을 때 출혈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가까이 위치한 동맥 부위를 압박

다. 지혈대

① 지혈의 마지막 수단

② 지혈대는 풀지 않고 있으면 그 이하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위험 : 한 시간에 한번 정도 풀었다가 죄어야함(시간을 체크하여 지혈대에 기재)



3 폭염 시 고온 손상환자 발생 시

종류	증상	처치법
열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증을 동반한 골격근의 수축, 경련(복부, 다리 집중되어 발생) · 체온은 정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김 ·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함 · 근육을 펴 주고 부드럽게 마사지 함
열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온 정상 또는 약간 낮음 ·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 두통 · 현기증과 어지러움 · 탈진 · 빠르고 약한 맥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김 · 옷을 느슨하게 함 · 부채나 선풍기로 시원하게 해 줌 · 젖은 타월로 열을 증발시킴 ·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적은 양의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함 · 환자상태의 호전이 없으면 열사병이 의심되므로 119에 도움을 요청
열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체온 · 건조하고 뜨거운 붉은색 피부 · 점차 의식이 나빠짐 · 약하고 빠른 맥박 · 얇고 빠른 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에 도움을 요청 ·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열탈진 처치법 시행

4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 및 화상

가능한 빨리 화학물질 제거	
건조한 물질	□물로 씻기 전 장갑 착용 후 솔로 털어냄
산과 알칼리	□즉시 많은 양의 차가운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세척
눈에 들어갔다면	□구조대가 올 때 까지 흐르는 물로 세척 □물은 눈을 묻지 않은 눈보다 낮게 하여 씻어냄

5 추락, 낙하 등에 의한 처치

■ 골절 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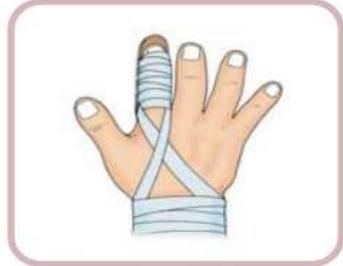
손가락 골절시 응급처치(예)



다친 손가락은 그 옆의 손가락과 함께 붕대로 고정시키거나,



자 등을 붕대로 감은 뒤 손가락을 얹고 붕대로 매준다



발목 골절시 응급처치(예)



신발과 양말을 벗기거나 가위로 잘라낸다.
벗기는 것이 위험하면, 끈만 푼다



담요나 방석 등으로 발 모양대로 싼 후,
손수건 등으로 묶는다. 이때 발가락 끝은 남겨두고 싼다.



다리 골절시 응급처치(예)



다친 상태로, 혹은 유아가 편안대로
다리를 펴거나 구부리게 한다.



다리 사이로 부목이나 방석을 끼우고
부목을 대거나 다른쪽 다리와 함께 묶어준다.



■ 심폐소생술의 단계

1. 반응확인

- 가. 쓰러져 있는 사람의 어깨 쇠골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친 후 반응 확인
- 나.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소리를 낼 것임(가벼운 경련, 쉿소리 같은 호흡 또는 반응이 없으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음)

2. 119 신고

- 가.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
- 나.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
- 라. 119에 신고할 때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가능하면 사무실 이름, 방의 호수, 도로나 거리 이름), 응급상황의 내용(심장발작, 자동차 사고등),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와 상태,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사용등) 등을 알려야함
- 마.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바.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적이 없거나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으면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름
- 사.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상태를 유지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그림 12. 구급상황(상담)요원 지시에 의한 심폐소생술

3. 호흡확인

- 가.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
- 나. 의식이 없는 사람이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적이면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 다. 일반인은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119응급 의료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

4. 가슴압박

- 가. 심장마비 상태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
 - 나. 성인 압박 깊이 약 5cm (6cm를 넘을 때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 다. 가슴압박 속도 분당 100~120회
 - 라.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반복 (인공호흡을 할수 있는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시행)
 - 마. 가슴압박 소생술은 심폐소생술과 달리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소생술 방법
 - 바.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 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장
- ※ 의식은 없으나 심장정지가 아닌 환자에게 가슴압박을 시행하더라도 손상을 입힐 위험성이 적으므로, 심장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목격한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5. 인공호흡

- 가. 머리기울임 - 턱 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
- 나.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고, 다른 손의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
- 다. 입 - 입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 구조자는 먼저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 (환자 입 주변 상처가 있거나 다쳤을 경우 코를 이용한 인공호흡)
- 라. 구조자는 평상 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쉬 후 환자의 입을

통하여 1초에 걸쳐 숨을 불어 넣고, 눈으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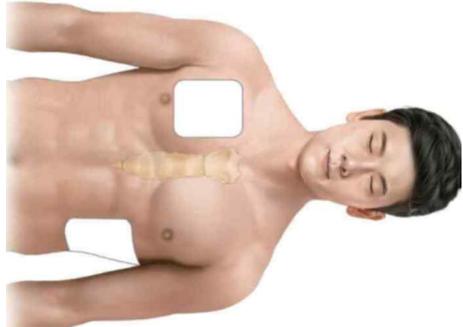
가슴압박	인공호흡	
		

6. 회복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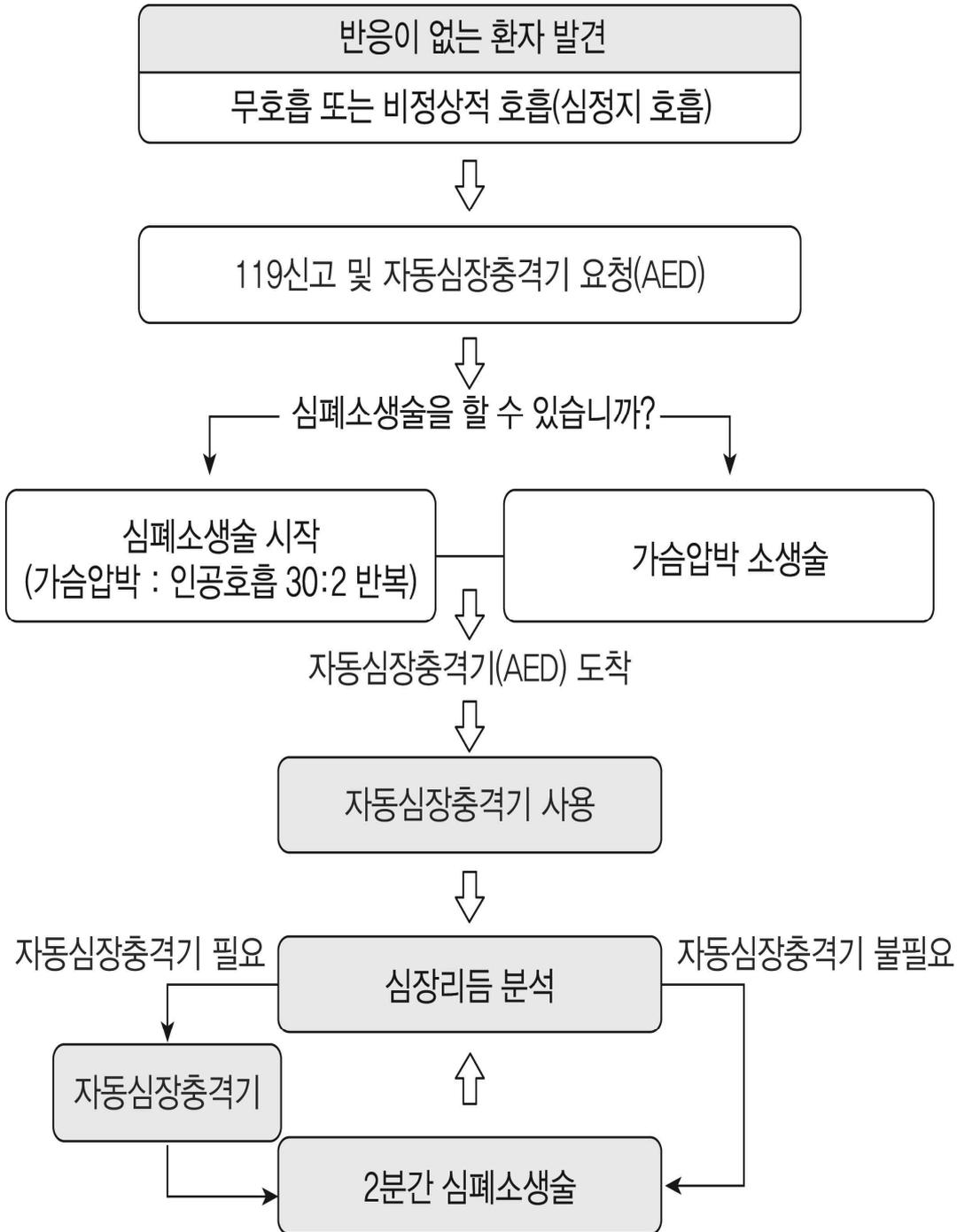
- 가. 회복 자세는 환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 권장
- 나.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
- 다.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힘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p>패드부착위치</p>	<p>1. 전원켜기</p>
	
<p>2. 패드부착하기</p>	<p>3. 심전도 분석 중</p>
	
<p>4. 전기충격 전 주위 접촉금지 경고</p>	<p>5. 전기 충격 시행</p>
<p>전기충격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의식이 돌아오지않은 상태) 심폐소생술 즉시 시행</p>	
	

■ 의식없는 환자 응급처치 절차(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VI. 위험별 시나리오 (위기관리매뉴얼)

1 사옥 등 건물관리 위험

2 폭염/한파 발생

3 태풍/폭우 발생

4 화재 발생

5 지진 발생

6 업무상 재해 발생

VI

위험별 시나리오(위기관리매뉴얼)

1 사옥 등 건물관리 위험

가 위험개요

위험구분	보안·재난분야	위험종류	보안위험	유관부서	전사
발생빈도	1	영향력	4		
주관부서	경영전략실	담당자	시설안전		

나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icator)

지표명	산식	판단기준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건물관리 위험	건물위험 진단지수	평시위험 발견 (긴급 안전진단)	관심 1단계 (벽체 크랙 발생 및 확산)	관심 2단계 (기둥·보·천정 등 크랙발생)	관심 3단계 (기둥·보·천정 등 크랙 확대 및 낙하)

다 단계별 대응 매뉴얼

① | 주의단계(Yellow)

관심1단계(벽체 크랙 발생 및 확산)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상황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안전진단 위해요소 확인(벽체 크랙 발생 등) • 자연재해연계 정기 안전위해요소 파악
2		위험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위험 구간 및 장소 경고 및 폐쇄조치 • 위험구간 보수 • 유사 사례 구역 파악 및 사전 보수 실시 	

② | 경계단계(Orange)

관심 2단계(기동·보·천정 등 크랙발생)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상황신고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랙발생 부분에 대한 파악 • 원인 파악 및 경영진 보고 • 해당 담당 부서 경위 확인 	
	2	위기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대책본부 설치 - 임원진 보고 및 위기대응 조직 편제 	위기대책본부
	3	위기대응 및 위협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전파 • 출입제한 조치 - 건물 용도 폐쇄 및 대체공간 확보 • 전문가의 안전진단 • 위험구간 보수 및 위해요소 제거 • 유사 사례 구역 파악 및 사전 보수 실시 	위기대책본부

③ / ④ | 심각단계(Red), 위기발생(Crisis)

관심3단계(기동·보·천정 등 크랙 확대 및 낙하)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위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에 따른 대응대책 조치 (인명피해확인 등) • 해당 담당 부서 경위 확인 • 업무 지속을 위한 대체 사무공간 확보 • 상급기관에 위기상황 보고 	위기대책본부
	2	위험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 대책방안 마련 - 전문가의 안전진단 - 언론 대응, 피해보상 등 방안 마련 - 건물 및 시설물 복구방안 수립 및 시행 (재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 	위기대책본부 홍보실
	3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취약요인 점검 실태조사 등 - 건물붕괴 등 비상시 행동요령 등 교육 강화 	

2 폭염/한파 발생

가 위험개요

위험구분	보안·재난분야	위험종류	재난위험	유관부서	전사
발생빈도	4	영향력	4		
주관부서	경영전략실	담당자	각 부서 업무 담당자		

나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icator)

지표명	산식	판단기준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폭염 위기관리	일 최고기온	31℃이상	33℃이상	35℃이상	40℃이상
한파 위기관리	일 최저기온	-9℃이하	-12℃이하	-15℃이하	-20℃이하

다 단계별 대응 매뉴얼

① | 주의단계(Yellow) 일 최고기온 33℃이상, 최저기온 -12℃이하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기상상황 청취	· 매스컴(라디오,TV) 기상상황		전사
	2	직원의 환자 발생 확인	폭염	· 열(일)사병 등 발생직원 확인	
			한파	· 현장업무로 인한 동상 환자 확인	
3	예방조치	폭염	· 차량용 아이스박스 비치 및 식수 확보	전사	
		한파	· 동파대비 수도관, 계량기 수시 점검		

② | 경계단계(Orange)

일 최고기온 35℃이상, 최저기온 -15℃이하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상황보고	• 기상청의 폭염경보 또는 한파경보 발령 보고	전사
	2	위기확정	• 위기대책본부 설치 - 임원진 보고 및 위기대응 조직 편제	위기대책본부
	3	위기대응	• 탄력근무 실시 및 현장·외부 활동 통제 -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탄력근무 시행 등 • 지자체 긴급지원반, 관련업체 비상연락망 점검	전사

③ / ④ | 심각단계(Red), 위기발생(Crisis)

최고기온 40℃이상, 최저기온 -20℃이하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위기대응	• 현장업무 및 외부 활동 자제 - 폭염·한파 대피소 운영 • 탄력근무 실시 및 현장·외부 활동 자제 - 혈관, 호흡기, 신경계통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조기 귀가 조치	위기대책본부
	2	위험해소	• 대피 직원 복귀 및 업무재개 • 상·하수도 및 배관 등 파손 시설 점검	

3 태풍/폭우 발생

가 위험개요

위험구분	보안·재난분야	위험종류	재난위험	유관부서	전사
발생빈도	3	영향력	3		
주관부서	경영전략실	담당자	각 부서 업무 담당자		

나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icator)

지표명	산식	판단기준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태풍 위기관리	기상예보	태풍 예비특보 및 주의보 발령	태풍 경보발령 및 대규모 재난 우려시	태풍 경보발령후 대규모 재난 확실시	태풍 관련 인적·물적 피해 발생

다 단계별 대응 매뉴얼

① | 주의단계(Yellow) 태풍 경보발령 및 대규모 재난 우려시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위기경보 전파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2	응급조치	•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 등 각종 피해 발생 우려지역 응급조치 실시	
	3	시설물 안전점검	• 해당지역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실시	
	4	비상연락 정비	• 피해복구 업체 비상연락망 정비	

② | 경계단계(Orange)

태풍 경보발령후 대규모 재난 확실시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상황보고	• 기상청의 태풍 경보발령에 대한 상부보고	전사
	2	위기확정	• 위기대책본부 설치 - 임원진 보고 및 위기대응 조직 편제	위기대책 본부
	3	위기대응	• (실외활동 통제) 경보발령에 따른 현장업무 및 외부행사 통제	전사
			• (비상근무 강화)재난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제 유지	전사
• (대피이동 준비)산사태 우려지역은 주요 물자를 고층으로 이전하고 대피 준비			전사	
• 지자체 긴급지원반, 관련업체 비상연락망 점검				

③ / ④ | 심각단계(Red), 위기발생(Crisis)

인적·물적 피해 발생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위기대응	• (대피소이동) 고지대 대피소로 긴급 대피 실시 • (탄력근무) 실·그룹장 재량에 따른 직원 귀가 조치	전사
			• (상황보고) 피해 인원 및 물자 현황 보고 (지사 → 권역본부 → 본사)	전사
			• (장비·업무지원) 피해복구장비, 전산장비, 피해지역 업무지원 (권역본부별 초동대처 및 추가 지원요청)	
2	위험해소	• (대체사무실 확보) 피해로 인해 업무 곤란 시 위험지역 외 대체 사무실 임차		

4 화재 발생

가 위험개요

위험구분	보안 · 재난분야	위험종류	재난위험	유관부서	전사
발생빈도	2	영향력	3		
주관부서	경영전략실	담당자	각 부서 업무 담당자		

나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icator)

지표명	산식	판단기준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화재 위기관리	화재진행	건조특보 (대비1단계)	일상적화재 화재 초기 (대응1단계)	화재 확대 대형화재우려 (대응2단계)	대형화재 (대응3단계)

다 단계별 대응 매뉴얼

① | 주의단계(Yellow)

화재초기(대응1단계)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화재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소방대 화재지점 출동, 초기소화실시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 지자체 및 소방서에 화재 신고 비상연락망 전파 	전사
	2	피난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동진압 곤란시 시설물 밖으로 대피 주요시설 자동가스소화설비 가동 (전산실, 원본실, 전기실) 	전사
	3	유선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기관에 화재상황 보고 	

② | 경계단계(Orange)

화재 확대(대응2단계)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상황보고	• 화재 발생 및 피해 상황에 관한 상부보고	전사
	2	위기확정	• 위기대책본부 설치 - 임원진 보고 및 위기대응 조직 편제	위기대책본부
	3	긴급대피	• 비상시 집결지 등으로 긴급 대피 • 화재현장 인근 주민 긴급대피 전파	전사
	4	화재진압	• 스프링클러설비 강제가동(감열부 가열) • 소방서 담당자에게 시설물 설명 (소방연결송수구 지점안내)	전사
	5	피해확인	• 피해 인원/물자 현황 파악	

③ / ④ | 심각단계(Red), 위기발생(Crisis)

대형화재(대응3단계)·재난복구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지휘통제	• 소방서 중심의 구조 및 화재진압·지휘통제	
	2	모니터링	• 화재상황 모니터링하여 인원 및 재산 피해 현황 파악	
	3	위기대응	• (위기관리 위원회 소집) 화재에 따른 복구 대책 회의	경영전략실
			• 피해복구 장비, 전산장비 등 지원 • 피해지역 업무지원 (권역본부별 초동대처 및 추가 지원요청)	
			• 피해로 인해 사업지연·변동사항 발생시 해당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전사 통지	경영전략실
		• 사업연속성확보계획에 따른 핵심업무복구절차 실행	해당부서	
4	위험해소	• (대체사무실 확보) 피해로 인해 업무 곤란시 위험지역 외 대체 사무실 임차		
5	사후관리	• 화재 위험시설 점검 및 직원 예방교육 실시		

5 지진 발생

가 위험개요

위험구분	재난분야	위험종류	재난위험	유관부서	전사
발생빈도	2	영향력	2		
주관부서	경영전략실	담당자	각 부서 업무 담당자		

나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icator)

지표명	산식	판단기준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지진 위기관리	지진 위기관리 시나리오 <지진 진도>	지진발생 전 (정상시)	지진규모 4.0 이하 (사람이 진동을 느끼나 피해 없음)	지진규모 4.0 초과 ~5.0 이하 (실내 물건들이 흔들림, 덜컹거림)	지진규모 5.0 초과 (벽에 금이가고 돌담 등이 파손)

다 단계별 대응 매뉴얼

① 주의단계(Yellow)

지진규모 4.0 이하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화재예방	• 전열기, 가스기구 등 발열장비 고정여부 확인	전사
	2	대피소 확인	• 인근의 대피소 확인 및 대피로 확보	전사

② | 경계단계(Orange)

지진규모 4.0 초과 ~5.0 이하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즉시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주변 인력 대피 및 발열장비 확인으로 추가피해 방지 지진으로 인한 직접피해로부터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책상 밑으로 보호, 책상이 없을시 방석 등으로 머리 보호 (엘리베이터) 가장 가까운 층으로 대피 (차량) 도로 우측에 정차, 통제구역 진입 금지 (현업) 머리 보호, 위험물 확인 	전사
	2	위기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대책본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대책본부 및 긴급 대응반 편성 	위기대책본부
	3	위기대응 및 위험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 발령에 따른 현장업무 및 외부행사 중지 피해 인원/물자 현황 보고 	위기대책본부

③ / ④ | 심각단계(Red), 위기발생(Crisis)

지진규모 5.0 초과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대피소 이동 및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대피소로 긴급 대피 실시 실·그룹장 재량에 따라 직원 귀가 조치 피해 인원 및 물자 현황 보고 (각 부서 업무담당 → 부서장 → 경영전략실) 	위기대책본부
	2	위기대응 및 위험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지역 업무지원 협조 (각 부서별 초동대처 및 추가 지원요청) 피해복구 장비, 전산장비 등 지원 피해로 인해 사업지연·변동사항 발생시 해당사항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지진에 따른 복구 및 건물 파괴시 인근지역 내 대체 사무실 임차 	위기대책본부
	3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지진발생 여부 지속 모니터링 	위기대책본부

가 위험개요

위험구분	보안·재난분야	위험종류	재난위험	유관부서	전사
발생빈도	2	영향력	2		
주관부서	경영전략실	담당자	각 부서 업무 담당자		

나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icator)

지표명	산식	판단기준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업무상 재해사고 발생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 및 요양급여 수령 여부	평상시	15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다 단계별 대응 매뉴얼

① | 주의단계(Yellow)

15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사고 발생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발생 인지자는 사고발생 경위, 재해 형태 등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관리책임자는 사고통보를 받은 즉시 경영지원실로 통보 	전사
	2	산재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 등 행정처리 	
	3	업무상 안전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상 재해 관련 안전보건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② | 경계단계(Orange)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긴급조치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인지자는 즉시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 및 관리책임자 보고 	전사
	2	위기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대책본부 설치 - 임원진 보고 및 위기대응 조직 편제 	위기대책본부
	3	위기대응 및 위험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 산업재해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사유, 형태, 병명 등 기록 및 관리 • 사고 발생부서 및 실, 그룹 인력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가능인원 파악 및 보조인력 채용 검토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안전교육 강화 등 	위기대책본부

③ | 심각단계(Red)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2인 이상 발생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위기대응 및 위험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책임자는 인사관리부서로 사고발생 경위보고 • 사고조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에게 사고조사 조사의뢰 - 원인 및 대응책 마련 • 산업재해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사유, 형태, 병명 등 기록 및 관리 • 사고 발생부서 및 실처지사 인력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발령인원 및 보조인력 채용 검토 	위기대책본부 외부전문기관
	2	위험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안전교육 강화 등 	

④ | 위기발생(Crisis)

사망사고 발생

조치사항	순서	조치사항명	세부내용	유관부서
	1	위기대응 및 위험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사고 직원의 장례절차 협의 및 지원 • 유족과의 협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 처리에 대한 협의 - 산재보험 이외의 추가 보상내용 설명 • 관련 기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안전 조치 등 • 산재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신청 등 행정처리 지원 	위기대책본부 외부전문기관
2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안전교육 강화 등 		



1 작업중지 표지

2 사고발생 보고서

3 사고조사 보고서

4 산업재해 조사표

문서번호 : _____ 호

작업(사용)중지

제주관광공사의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음 대상에 대하여 작업(사용)중지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을 재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주관광공사의 사규에 따라(업무관련 법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 및 제6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업(사용)중지 대상	
보완 대책사항	

년 월 일

제주관광공사

관리 부서장 : _____ (인)

※ 이 표지는 해당 관리 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전화 :

사고발생 보고서

1. 사고발생(관련)부서 :
2. 사고 일시 :
3. 사고 장소 :
4. 사고 내용 :

5. 사고 관련 기재사항

① 인명사고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령	성별	생년월일	사고내용

② 시설물(재산) 피해사고

시설물(재산) 구분	피해시설물(물품)명	주요 피해내용	비 고

6. 조치사항 :
7. 기타 참고사항(사후대책 등) :

20 . . .

작성자 : (인)

확인자: (인)

사고조사 보고서

1. 사고 구분							
사고 부서 :				사고 일시 : 년 월 일			
사고 종류 :				사고 장소 :			
2. 인적 사항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령	성별	생년월일	사고내용
(예시)사고 관련자 피해 자							
사고당시 보직				보직 담당기간			
2. 시설물(재산)에 관한 사항							
시설물(재산) 구분		피해시설물(물품)명		주요 피해내용		비 고	
3. 사고내용 및 경위							
4. 사고원인분석							
5. 사후대책							
6. 기 타							

20

작성자 : (인)

확인자: (인)

4

산업재해 조사표(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12345678901 (45678910111)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②사업장명	<input type="checkbox"/> 주유소	③근로자 수	0명
	④업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소재지	(12345)○○도 ○○시 ○○동 ○○로 800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⑨공사종류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성별	[√]남 []여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주유원	
	입사일	2015년 9월 1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1년 4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양계손상, 목절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발	⑰휴업예상 일수	휴업 [100]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2017]년 [1]월 [2]일 [월]요일 [10]시 [37]분
	재해 발생 당시 상황	발생장소	○○도 ○○시 ○○동에 소재한 <input type="checkbox"/> 주유소내 이동식 세차기 이동경로
		재해 관련 작업유형	주유소내 이동식 세차기(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세차기가 전·후로 이동하는 방식)를 조작 하여 고객의 차량을 자동 세차
		재해 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는 동 주유소 방문 승용차의 세차를 위하여 세차기 정면의 조작판넬 스위치를 작동하여 사고 전까지 2대의 차량을 세차 하였고, 3번째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이동식 세차기 전면에 위치한 조작판넬을 전면이 아닌 측면에서 조작중 갑자기 작동하는 이동식 세차기라 세차기가 망부하는 레일 사이에 오른쪽 발이 끼이는 재해 발생
⑲재해발생원인	세차기 정면에서 작동을 해야 하는 조작판넬을 측면에서 조작중 오작동으로 갑자기 작동됨에 따라 이동식 세차기와 레일 사이에 발이 끼이는 재해 발생, 또한 세차기 작동시 끼임· 부딪힘 등의 위험을 경고하는 경보장치(경광등 및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IV. ⑳재발 방지 계획	○ 세차기는 정면에서만 조작할 수 있도록 측면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청소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위험기간 동행시 세차기 운전 정지
	○ 세차기 작동시 근로자가 위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광등 또는 경보장치 설치, 접근금지 경고표지 부착
	○ 세차기 작동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마련

작성자 성명 정○○
 작성자 전화번호 000-0000-0000
 작성일 2017년 1월 10일
 사업주 정○○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박○○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input type="checkbox"/> 기인물	<input type="checkbox"/>
	작업지역·공정	<input type="checkbox"/> 작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작성 방법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⑭ 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⑯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발생정보

⑱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⑲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